

붙임 2

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신청 안내

1.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 -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인 사람
 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
2. 제출서류 등 안내

- 제출서류: **의사진단서 원본 (의사 소견서 불인정)**
 - 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- 발급기관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-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
 - ①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
 - ②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
 - ③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

[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]

상기인은,

- ① 보건복지부 「장애정도 판정기준」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,
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※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2호, 2023. 3. 21.)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- 신청: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이 제외되는 청각장애 대상에 체크
- 제출서류: **2024. 1. 1. 이후 발급된 진단서 원본**
 - ※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7. 24.)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
- 제출방법: 제출마감일까지 우편(등기) 제출
 - 제출처: (28515)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문화동)
충북도청 신관,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
 - 제출마감일: **2026. 7. 24.(금)**
 - ※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- 인정기간: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
 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4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